

2. 기술명 : 콘크리트 박스구조물 우각에 프리플렉스 강재를 이용한 전단 및 휨 보강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우각부(슬래브와 벽체사이)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보강재를 설치하여 토압하중에 대응하는 가압력이 도입되어 외력하중을 저감시키고 단면저항력을 증대시켰으며, 보강재는 형강을 가공, 제작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면서 현장 시공이 간편하고 구조물과 일체화를 통해 높은 구조적 안전성과 박스내부의 공간 확보가 용이한 보강 기술이다.

4. 기술범위

- 부모멘트 또는 전단력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지중 철근콘크리트 박스구조물의 우각부 등에 프리플렉션이 도입된 강재를 설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보강 공법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7, 김진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044-205-4187, 정진경)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7, 김진호)

1) 전자우편 : filmle@korea.kr, kimjh81@kodipa.or.kr

2) 팩스번호 : 044-205-8901

3)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709호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 05402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9(강동구 성내동 447-9) 한국방재협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89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00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대우건설(김형) ② (주)브니엘컨설팅(강인규)

나. 전화번호 : ① 031-250-1171 ② 02-3452-9130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700호

3. 명칭 :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중력식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보강토 옹벽 포함)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전단키와 연결철근을 활용한 프리캐스트 모듈러 옹벽(PMR 옹벽) 공법으로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L형 콘크리트 블록 및 뒷채움 사석의 자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저판 및 측면의 전단키와 상·하부 옹벽을 일체화시키는 연결철근으로 구성된 중력식 옹벽공법이다. 본 공법은 현장타설식 콘크리트 옹벽의 거푸집 설치, 철근망 조립,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에 의한 공기지연을 단축하여 붕괴 절토사면 및 도심지 성토사면에 앵커 등의 보강 없이 자립식으로 급속보강 및 급속시공이 가능하며, 추가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앵커, 네일 등 다양한 공법을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위>

프리캐스트로 제작된 L형 콘크리트 블록의 저면과 부벽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조립식으로 쌓기가 가능하도록 개발한 블록을 일체구조 형태로 시공하기 위하여 옹벽 상하부와 좌우측면에 전단키를 설치하여 서로 맞물리게 쌓고 옹벽 전면판 상면에서 저면으로 뚫려있는 연결홀에 철근을 삽입한 후 주변부를 몰탈그라우팅으로 채워 옹벽 전체를 일체화 시킨 6m이하 모듈러 옹벽 시공방법.

5. 보호기간 : 2013.06.19. ~ 2021.06.18.(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21-1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청문)통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7일

광주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7조(폐업명령) 및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2. 위반내용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불이행